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과외교습 범위에 ‘체육교습행위’ 를 포함〉

■ 양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90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양문석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11.
3. 회부연월일 : 2026.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외교습의 범위에서 체육을 제외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교습 활동은 제도적 관리·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체대 입시 준비 등을 위한 사설 체육교습 현장의 지도자 자격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체육교습 행위를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체육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교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체육교습 행위를 개인과외교습자에 포함하여 신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학원법상 감독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u>과외교습</u> 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나.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과외교습(체육교습은 제외한다)</u> ----- -----. 3. -----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체육시설 또는 체육활동이 가능한 실내외 공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u>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 <u>예능</u> 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	4. ----- ----- ----- ----- ----- <u>예능 또는 체육</u> -----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5.·6. (생 략)	----- ---. 가. ~ 다.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¹⁾(이하 “학원법”이라 함)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규율하면서, 교습의 규모와 형태 등에 따라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로 구분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학원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로서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습소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과외교습 시설로서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 등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서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한편, 학원법상 ‘과외교습’에는 지식·기술·예능에 관한 교습은 포함되어 있으나 체육교습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체육교습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게 됨.

< 현행 학원법에 따른 체육교습 현황 >

	예능교습	체육교습
학원	○	×
교습소	○	×
개인과외교습	○	×

- 개정안은 현행 학원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체육교습 중 개인과외교습 형태의 체육교습을 새롭게 학원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체육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교습비·교습시간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학원법상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반면, 학원 및 교습소 형태의 체육교습은 현행과 같이 학원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대입시학원 등 체육교습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여 신고, 교습비 및 교습환경 등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실제로 현행 체육시설법령에 따른 체육교습업은 그 대상과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체대입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교습 중 일부는 학원법과 체육시설법 어느 법률에 의해서도 관리되지 않고 있음.

구체적으로 체육시설법 제10조²⁾는 ‘체육교습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2에서는 체육교습업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농구·수영·야구·축구 등 일정한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 등을 규정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8.> <u>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u>	
업 종	영 업 의 범 위
10. 체육교습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한다)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	---

□ 체육교습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체육시설법 개정을 통해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도입되었으며, 현행법령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반면,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육대학 입시를 준비시키는 이른바 ‘체대입시학원’ 등은 체육시설법상 체육교습업에 해당하지 않고, 학원법상 과외교습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별도의 등록·신고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공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이러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체육교습 중 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원법의 적용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거 교육부 소관의 「시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육교습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9년 체육시설법이 제정되면서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체육’이 삭제되었음. 이후 체육교습은 체육시설법을 중심으로, 지식·기술·예능 등의 교습은 학원법을 중심으로 각각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유지되어 왔음.

- 이러한 입법연혁 및 현행 법체계를 고려할 때, 체육교습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다시 학원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체육교습을 체육교습업의 형태로 체육시설법에서 별도로 규율해 온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특히 개정안은 학원 및 교습소 형태의 체육교습은 현행과 같이 학원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개인과외교습 형태의 체육교습만을 학원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체육교습임에도 교습형태에 따라 적용 법률 및 관리체계가 달라지게 되므로, 법 적용 및 지도·감독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체대입시학원 등 현행법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육교습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과외교습 형태의 체육교습을 학원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뿐

만 아니라 체육시설법상 체육교습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여 체육교습 전반의 규율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 및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체육교습을 개인과외교습에 한하여 학원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할 경우 체육시설법과의 이중규제 및 법 적용상의 혼란이 우려되므로, 체육교습에 대한 관리·감독은 현행 체육시설법상 관리체계를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체육교습에 대한 제도적 관리·감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체육시설과 일반 학원의 운영 성격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193